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557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현 담당변호사 유은진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2. 23.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9가단1134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가사부로 이송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D, E, F에게 각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선정자 D, E,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 4.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와 선정자 D, E, F 및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은 경북 고령군 H 대 699㎡와 그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8. 11. 2. 망인을 대리하여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0,000,000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은 130,000,000원이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망인의 농협계좌로 2018. 11. 2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입금받았는데, 그 중 8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합계 130,000,000원은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인출한 80,000,000원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6,000,000원(= 130,000,000원/5)을 공제한 나머지 54,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매대대금 중 8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증여한 돈, 망인이 선정자 F에게 증여한 돈,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과 장례식 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들도 상속재산에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참조).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80,000,000원 또는 위 54,000,000원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2) 위 54,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바, 공동상속인인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고, 앞서 본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상속재산분할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사비송사건의 나목 마류 제10호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가정법원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따라서 이 사건 소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가사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정현, 판사 박재성

선정자명단

1. A
2. D
3. E
4. F. 끝.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13,500,000원이 아닌 합계 5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어서 예비적 청구라 볼 수 없기에 이를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는다.

2) 망인의 사망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그 매매대금 중 80,000,000원을 인출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재산은 위 80,000,000원 또는 위 8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